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등

사. 모니터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아. 협조요청 사항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하여 응답 가능한 직원 1인과의 면담(5~10분간 정도)

자. 기관방문 날짜 : 붙임 목록 참조(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확정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4. 공문을 받으신 각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관련부서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김태은(☎ 053-212-70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월 청소년이용시설 모니터링 대상 및 방문일시 목록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장

수신자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장,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장, 경주 청소년 수련관장, 화랑교육원장, 구미 청소년 문화의 집, 구미 선산 청소년 수련관장, 문경 청소년 문화의 집장, 문경 청소년 수련관장,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장, 상주 청소년 수련관장, 상주 청소년 문화의 집장,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장, 울진 과학체험관장, 포항 청소년 수련관장, 포항 청소년 문화의 집장, 포항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장

담당자 **김태은**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김용국** 2013. 7. 11.

협조자

시행 대구인권사무소-2753 (2013. 7. 11.) 접수

우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53-212-7008 팩스번호 053-212-7007 / hopeuple@nhrc.go.kr / 대국민 공개